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신 종 갑 의원)

의안 번호	23-38
----------	-------

발의년월일 : 2023. 3. .

발의자 : 신종갑, 고병준, 권영숙,
남해석, 최은하

1. 제정이유

본 조례는 마포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요사업계획을 의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조례 제정을 통하여 마포구와 마포구의회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마포구의회와 마포구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합리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각각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통보사항(안 제2조)
- 다. 통보기한 및 통보내용(안 제3조~제4조)
- 라. 통보사항의 배포(안 제5조)
-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6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3. 3. 22. ~ 3.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요사업계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마포구와 마포구의회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보사항) 이 조례에 따라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통보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계획
2.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계획
3.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되거나 100명 이상의 주민이 참가하는 행사계획
4. 그 밖에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이나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

제3조(통보기한) 제2조 각 호의 계획이 수립되면 구청장은 즉시 이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통보내용) 제2조에 따라 통보할 내용은 사업명,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역, 사업기간, 예산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통보사항의 배포) 의회에 통보된 내용은 의회 의정담당이 관리하고, 이를 의회 모든 의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
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새마포담당관 손정우
연 락 처	02-3153-8502